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69호(號) 1927(昭和 2)년 7월 22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32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102호(號) 만주선 조선선 직통화물 운수규칙(南滿州線朝鮮線直通貨物運輸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7월 22일 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수제(首題),[1] 본문(本文) 및 본(本) 규칙(規則) 중 「만주선(滿洲線)」을 「만철선(滿鐵線)」으로, 「조선선(朝鮮線)」을 「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」으로, 「직통화물(直通貨物)」을 「연락화물(連絡貨物)」로, 제2조(條) 중(中) 「함경선 북부(咸鏡線北部)」를 「함경중부선(咸鏡中部線), 함경북부선(咸鏡北部線) 및 청진선(淸津線) 각(各) 역(驛)과 간이역(簡易驛)」으로, 제4조(條) 중(中) 「조선선 화물운임 및 요금 규칙(朝鮮線貨物運賃及料金規則) 제12조(條)」를 「조선국유철도 화물 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60조(條) 및 제61조(條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6조 연락화물(連絡貨物)에 대하여는 만철선 철도운송규정(滿鐵線鐵道運送規程) 제58조(條)제2항(項)을 적용(適用)하지 아니하고 양선(兩線) 모두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88조(條)를 준용(準用)함.

제7조 만철선 철도운송규정(滿鐵線鐵道運送規程) 제58조(條)제1항(項), 제59조(條) 및 제59조(條)의2에 의한 차액운임(差額運賃) 및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87조(條) 및 제88조(條)에 의한 할증운임[增運賃]은 하송인(荷送人)으로부터 이것을 청수(請受)함.

제10조(條) 중(中) 「소정(所定)의 수수료(手數料)」를 「지시수수료(指示手數料)」로, 제11조(條) 중(中) 「소정(所定)의 양식[式紙]」을 「청구서(請求書)」로 개정(改正)함.

세칙(細則) 및 설명(說明) 중(中) 「조선선(朝鮮線)」을 「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」으로, 「만주선(滿洲線)」을 「만철선(滿鐵線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9, 11 및 13부터 15까지를 삭제(削除)함.

12 지도수수료(指圖手數料)는 지도(指圖)을 수리(受理)한 선(線)의 수득(收得)으로 함.

17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착화물(著貨物)을 발역(發驛)으로 반환(返還) 또는 만철선(滿鐵線)으로 착역(著驛)을 변경(變更)하는 경우, 원(原) 착역(著驛)은 단동역[安東驛]에서 발행(發行)한 관세입체금징수의뢰서(關稅立替金徵收依賴書) 및 통행허가서[放行單]를

---

1) 역자: 首題는 公文書 따위의 첫머리에 쓰는 제목을 말한다.

화물운송통지서(貨物運送通知書)에 첨부(添附)하여 동역(同驛)에 송부(送付)함으로 함.